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7. 제천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5. 9.
- 다. 상 정 일 자 : 2008. 5. 14.(제1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팀장 최춘일)

3. 심의사유

- 공유재산(공작물) 취득
- 공유재산(건 물) 취득

4. 주요내용

< 취득재산 : 2 >

(단위: 천원)

구 분	취 득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건물(동/㎡)	공작물(동/톤)		
계	1 393	1 6,000	3,006,000	
수도사업소		1 6,000	2,123,000	상수도시설 배수지 설치
자치운영팀	1 393		883,000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3층 증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법적 검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7조1항1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취득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것임.

【 행정적 검토 】

-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사업은 의림지 일원(제천시 고암모산동~송학면 도화리)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통합 배수지 용량 6,000톤, 송수관로 총길이 5.74km, 배수관리 총길이 2.26km 이며, 총사업비 74억원(시비%)이며, 이중 배수지 설치사업은 2,123백만원.
- 본안 심의시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배수지 설치에 따른 수혜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용량과 예산은 적정한지, 사업시기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 위 사업이 제1,2 바이오밸리 용수공급을 포함한 사업인지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3층 증축사업은 현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시 현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청전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수를 포함한 자치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물면적 393m²에 대해서 추정가격 883,000천원이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 예산을 세우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먼저임. 예산이 먼저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통합배수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박성하의원)
: 이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 총 사업비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인 기준면에서는 절차가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산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박성하의원)
: 절차가 좀 결여되었음.(회계팀장 최춘일)
- 가압장은 3개다 폐쇄하는 것인지(박성하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압동에 화영배수지하고, 청전배수지 시청가압장 세군데가 당초에 계획상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가동 시점을 기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음(수도사업소장 진한중)

○ 한개 공사에 일정 부분 충분히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여태까지 제천시의 확고한 입장은 사업의 연관성이나 일체성 때문에 분리발주못함. 결국은 우리 제천시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응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추진내용을 봤을 때 배수지 공사하고 송배수관로 매설공사하고는 아주 별개의 공사다라는 식으로 보고자료로 올라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강현삼의원)

: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기 보다는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일단 회계팀장님이나 기획예산팀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임. 사업부분으로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음. 그것은 배수지 공사를 하지만 그 안에 배수에 공급관이 연결되고 레벨이 복합적으로 시설되어야되는 부분이며, 그 다음에 의림대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길지 않음. 분할 발주하는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음.

(수도사업소장 진한중)

○ 지금 현재 배수지 공사의 부지는 기존 시유지에 시설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 매입은 없는 것인, 현재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지에 배수지를 설치함으로써 체육시설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복구할 계획은 있는지?

: 부지매입은 없으며 지금 보면 당초에 원래 지상물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일단 지하구축물로 들어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일부만 올라오게 됨. 그래서 그것도 운동장에 가에 부분을 외곽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음.

○ 통합 배수지에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통합 배수지로를 통해 가질 제2 바이오밸리와 웰빙휴양타운, 연수타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업용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권건중의원)

: 실질적으로 통합 배수지가 되게 되면 의림지 일원(왕암동 포함), 바이오밸리, 향후 앞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도화리 송학 쪽에까지 가능함. 용수공급까지 포함한 것임(수도사업소장 진한중)

- 청전동 주민자치센터에 취득에 관한 문제인데, 추정가격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강현삼의원)
: 8억 83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8억 6천만원이고요. 금년도에 반영 될게 실시설계비만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자료를 제출하겠음.
(회계팀장 최춘일)
- 의림지 통합 배수지에 따른 잘못된 것 인정하는지(박성하의원)
: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
(부시장 김재갑)
- 앞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에 하는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받았는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동의를 됐는지 아닌지를 예산 세울때마다 다 표기해서 예산편성표에 적어 주기 바람.(박성하 의원)
: 알겠음.(부시장 김재갑)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0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